

항공티켓 전문 여행사  
**대륙여행사**  
 213.386.3100

# 중 앙 일 보

**트리니티 아카데미**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곳...  
 트리니티아카데미 오사카...  
 자녀들의 성취향상이 보됩니다. 미국이 열립니다.  
**213.385.3131**  
 2330 W. 9th St. #408 Los Angeles, CA 90020

안내: (213)368-2500 고객센터: (213)368-2600  
 Los Angeles KoreaDaily.com

JoongAng Ilbo

COPYRIGHT 2012  
 Tuesday, January 17, 2012 A

**간혹간담 ① 즐기는 가정 폭력 참극**

## 단순 가정폭력 기록도 재입국때 이민법원행

### 추방통보 케이스 급증

한인 1세들의 가정폭력이 1.5세와 2세 가정으로 대물림하고 있는 현상이 보고된 가운데 <본지 1월 14일자 A1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추방통보를 받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법과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가정폭력 기록을 갖

고 있는 이민자들이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입국심사 과정에 서 이민법원 출두명령서(NTA)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적인 구타나 학대 케이스가 아니라 부부싸움 도중 경찰에 신고된 단순 케이스까지 모두 이민법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 해당 한인들은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신혜원 가정법 변호사는 “배우자와 말다툼중 폭력을 행사하다 또는 부부싸움하던 중 무심코 경찰에 신고했다 기록이 남아 가정폭력 혐의가 적용돼 추방조치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알렸다.

→ 4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 1면 '가정폭력'에서 이어집니다  
 신 변호사는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 부부싸움 기록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이민법원 출두명령서를 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며 “지금은 가정폭력 기록이 있거나 어린이 학대나 방치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은 물론,

단순 부부싸움을 했다고 인정한 이민자들에게까지 40% 출두명령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미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가 완화된 반면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재입국 조사가 강화됐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자들은 해외여행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매춘관련 범죄자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와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혐의를 받으면 추방대상 범지자로 분류된다.

Los Angeles, CA 90005

excepts for \$er year'es, CA ngeles, STER: 'lshire	Section A-U.S. Edition
	Section B-Korea Edition
	Section C-Sports
	Section D-Classified Ads
	Section G-Business

기사입력: 01.16.12 20:36

▶ 인쇄하기

## [긴급진단] 줄이는 '가정폭력 참극'...단순 가정폭력 기록도 재입국때 이민법원행

한인 1세들의 가정폭력이 1.5세와 2세 가정으로 대물림하고 있는 현상이 보고된 가운데 <본지 1월 14일자 A1-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추방 통보를 받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법과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가정폭력 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법원 출두명령서(NTA)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적인 구타나 학대 케이스가 아니라 부부싸움 도중 경찰에 신고된 단순 케이스까지 모두 이민법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 해당 한인들은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신혜원 가정법 변호사는 "배우자와 말다툼중 폭력을 행사하다 또는 부부싸움하던 중 무심코 경찰에 신고했다 기록이 남아 가정폭력 혐의가 적용돼 추방조치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알렸다.

신변호사는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 부부싸움 기록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이민법원 출두명령서를 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며 "지금은 가정 폭력 기록이 으스스거나 어린이 학대나 방치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은 물론, 단순 부부싸움을 했다고 인정한 이민자들에게까지 100% 출두명령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미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가 완화된 반면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재입국 조사가 강화됐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자들은 해외여행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매춘관련 범죄자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와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혐의를 받으면 추방대상 범죄자로 분류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